

한미FTA 지재권협상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특허의 비율과 예상연장기간

오근엽 충남대 교수(경제무역학부)
김태기 전남대 교수(경제학부)
김봉한 공주대 교수(경제통상학부)

I. 서 론

한미 FTA에서 지재권 분야의 협상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한국의 지재권 관련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재권 분야의 쟁점 중 지재권 분야의 협상 결과는 저작권, 상표, 특히, 집행 분야 등의 네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분야에서는 심사지연 등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미실시 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 무효화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¹⁾

본고에서는 특히 등록지연에 대해 특히 존속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애초, 특허 출원 후 혹은 심사청구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어떤 불합리한 사유로 인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미국 측은 특허 출원 후 48개월, 심사청구 후 24개월을 기준 기간으로 하여 이보다 늦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게 되면 내국인 및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중상당 부분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외국의 특허 보유자들은 상당한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특허를 이용해야 하는 측에서는 연장기간 동안 자유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 특허들은 상당 부분이 출원 후 바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외국특허의 많은 부분이 특히 존속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과 협상하여 결국, '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 이 모두 지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최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등록지연문제가 특허기간 연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II.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문제

1. 개요

한·미 양국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하지만, 미국은 심사지연 등으로 특허 등록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우리에게 동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협상 결과 요구사항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이때 '불합리한 등록지연' 이란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이 경과된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출원인에 기인하는 지연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1) 외교통상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 4. 4

특허청의 특허등록 거절결정에 불복,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을 거쳐 결정이 번복되어 등록된 경우도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포함되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특허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모든 출원특허를 심사하므로 일괄적으로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우리나라는 출원 후 5년 내에 심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심사청구순대로 심사하는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출원 건마다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날을 따져보아야 한다. 즉, 출원 후 1년 내에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을, 출원 후 1년이 넘어서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을 적용받아 이보다 늦게 등록되면 불합리한 등록지연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도이고, 출원인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동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기업들이 출원하는 원천특허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특허실시료 및 분쟁가능성의 증가가 예상된다. 더구나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를 볼 때, 외국인 특허출원자의 경우, 우리의 심사청구제도를 악용하여 존속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고의로 심사청구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 예상 효과

단기적으로는 특허존속기간 연장 시 관련 업계의 로열티 부담증가 및 자유실시 지연에 따른 기대수입 감소, 특허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등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의약품특허를 외국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generic) 위주의 우리 제약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신약의 가격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수준 강화로 기업들의 R&D 투자증대 및 기술력 제고로 특허실시료 수지 개선 내지 흑자전환이 가능할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협상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이 적용될 특허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8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는 이 시기가 지나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III. 전체산업에서의 등록지연 현황 및 영향분석

본 절에서는 한미 FTA 자재권 협상쟁점 중 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허들의 등록지연 현황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의 특허가 어느 정도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 특허청에 2006년 1.1~2007년 2.28 기간동안 등록된 155,514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표 1>은 출원 후 4년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155,514건을 출원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출원 후 소요기간, 지연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출원 후 4년’ 기준 분석

구분	총건수	전체특허의 평균소요기간(월) (출원 → 등록)	출원 후 4년 초과 특허		
			건수	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전체	155,514	31.5	31,330	20.15	73.5
내국인	114,934	25.8	11,461	9.97	76.4
외국인	40,580	47.6	19,869	48.96	71.8

표에서 보면, 등록된 총 155,514건은 출원 후 평균 31.54개월 후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는 출원 후 4년에 훨씬 못미치는 기간 이내에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들 중 출원 후 4년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79.85%이고, 4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약 20.15%가 되었다. 4년 이상 걸린 특허만을 보면 소요기간 평균 약 73.5개월로서 6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보아 일부 특허들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내국인 출원특허와 외국인 출원특허로 나누어 보면, 내국인의 경우 9.97%가 4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특허의 경우 48.96%이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출원 후 4년을 초과하여 등록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을 계산해보면 내국인 특허의 경우 25.9개월, 외국인의 경우 47.6개월로서 내국인 출원특허보다 외국인 출원특허가 등록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내국인 특허보다 외국인 특허 출원분을 심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인 출원자들은 특허를 출원한 후에도 바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서 출원하는 경향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이 된 특허의 경우 평균적으로 특허출원 후 10.4개월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외국특허 출원자들은 평균 23.7개월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내국인 출원자들이 평균 5.7개월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에 비해 약 18.0개월만큼 늦게야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출원자들과 내국인 출원자들이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직접 비교해보도록 하자. 〈표 2〉에서는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사청구 후 약 21.12개월이 소요되어 기준기간인 3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이내에 평균적으로 특허등록이 종료됨을 보여준다. 이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은 출원자들이나 혹은 특허청의 관심사이며, 특허청은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서 보면, 내국인의 경우 20.2개월, 외국인의 경우 23.9개월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출원분의 경우 약 2.7개월 정도 심사에 더 시

〈표 2〉 ‘심사청구 후 3년’ 기준 분석

구분	총건수	전체 평균 소요기간(월)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3년 초과 특허		
			건수	지연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전체	155,514	21.1	5,602	3.60	44.6
내국인	114,934	20.2	2,445	2.12	43.9
외국인	40,580	23.9	3,157	7.78	45.1

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심사청구 후 3년 이내에 등록을 종료하고 있다.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3년 이상이 걸린 특허는 전체의 3.6%인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2.12%가 외국인의 경우는 7.78%가 이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출원분의 경우 자연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³⁾

또한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한 특허들의 경우, 내국인 출원분은 43.9개월, 외국인 출원분은 45.1개월이 소요됨으로써 기준인 3년에 비해 내국인 출원분은 약 8개월, 외국인 출원분은 약 9개월 초과하고 있다.

이제, 협상 결과 나타난 ‘출원 후 4년 및 심사청구 후 3년’을 모두 초과할 때 지연된 것으로 보는 기준에 맞추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특허의 현황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될 기준이므로 가장 중요하다. 이 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면, 등록된 특허 전체의 1.89%만이 이에 해당된다. 내국인 특허의 경우 0.70%로서 매우 미미한 비율만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는 5.25%로서 내국인 특허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지만 그 비율 자체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낮다. 이를 지연된 특허만을 보면, 내국인의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70.6개월이 걸리는 반면 외국인 특허의 경우 81.9개월이 걸리고 있다. 지연된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 후 걸리는 시간은 내국인 50.9개월, 외국인 47.2개월로서 외

〈표 3〉 ‘출원 후 4년 및 심사청구 후 3년’ 기준

구분	총건수	등록 특허 전체 평균 소요기간(월)		출원후 4년 심사청구후 3년 초과 특허			
		출원-등록	청구-등록	건 수	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출원-등록	청구-등록
전체	155,514	31.5	21.1	2,932	1.89	78.9	48.2
내국인	114,934	25.9	20.2	802	0.70	70.6	50.9
외국인	40,580	47.6	23.9	2,130	5.25	81.9	47.2

2) 2008년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이 평균 9.8개월로 단축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실제로는 심사착수기간(FA, First Action) 즉, 심사청구된 날로부터 심사관이 최초 통지서 (기결사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서’ – 이를 보내더라도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과 한차례 또는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뒤 기결/또는 등록하게 됨 –) 또는 ‘등록결정서’를 보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심사청구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은 본 연구대상이 된 특허 즉, 등록으로 결정된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부터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기간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3) 하지만 본래 미국 측이 주장했던 2년을 중심으로 하면 전체 특허 중 내국인은 31%, 외국인특허는 4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과정에서 한국특허청의 노력으로 ‘심사청구 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될 특허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연특허들의 비율 및 평균지연기간

구 分	1년 이내 심사청구 특허					1년 이후 심사청구 특허						
	건수	지연건수	지연 비율(%)	총건수 대비 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건수	지연건수	지연 비율(%)	총건수 대비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출원-등록	청구-등록					출원-등록	청구-등록
전체	121,977	974	0.80	0.63	57.4	56.3	33,537	1,958	5.84	1.26	89.5	44.2
내국인	102,249	481	0.47	0.42	56.8	56.3	12,685	321	2.53	0.28	91.3	42.9
외국인	19,728	493	2.50	1.21	57.9	56.4	20,852	1,637	7.85	4.03	89.2	44.4

국인 출원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짧다.⁴⁾

이제 지연대상인 특허들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자. 실제로 존속기간 연장은 ‘출원 후 4년’, ‘심사청구 후 3년’이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미치지 못하는 특허만 해당된다. 이들 특허 중에는 심사청구를 1년 이내에 했는데도 출원 후 4년이 지나서야 등록된 특허가 있고 출원 후 심사청구를 1년 이후에야 했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진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야 얼마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지연된 특허들 중 심사청구를 1년 이내에 한 특허들의 경우에는 출원에서 특허까지 걸리는 기간에서 4년을 감하면 존속기간 연장기간이 되고, 심사청구를 출원 후 1년 이후에 한 특허들은 심사청구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이 존속기간 연장기간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균적으로 보면 내국인들은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함에 비해 외국인들은 거의 2년이 다되어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이를 1년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보자.

1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전체 15만여건 중 121,977건으로 약 78%가 1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이중 내국인은 102,249건으로서 내국인 출원분 중 약 89%가 해당됨에 반해서 외국인은 19,728건으로서 외국인 출원분의 49%에 불과하다. 이들 1년 이내 심사청구를 한 특허들 중에서 ‘지연’에 해당하는 특허만을 보면, 내국인특허는 0.47%, 외국인특허는 2.50%로서 양쪽 공히 지연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지연특허는 내외국인 합해서 974건이며 평균 57개월이 걸렸다. 따라서 9개월 정도 존속기간 연장이 예상되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출원 후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는 33,537건으로 전체 등록건 중 22%인데, 내국인 특허는 11%만이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 출원분은 51%가 이에 해당된다. 지연된 특허만을 보면 심사청구부터 등록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44.2개월로서 FTA이후에는 약 8.2개월 정도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국인은 42.9개월 외국인은 44.4개월로서 각각 6.9개월과 8.4개월로 외국인의 경우 약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외국인 사이의 차이는 1.5개월로서 그다지 길지 않다.

결국, 전체 특허 15만건을 기준으로 보면 0.63%가 평균 9.4개월 정도, 1.26%가 8.2개월 정도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대략 전체 특허의 1.9%가 평균 8.2~9.4개월 정도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내국인 특허는 전체 11만 건을 기준으로 볼 때 0.42%가 8.8개월, 0.28%가 6.9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여 내국인 특허 전체의 0.7%정도의 특허가 평균 7~9개월 정도의 연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특허는 전체 4만여건 중 1.21%의 특허는 9.9개월 연장이, 4.03%는 8.4개월 연장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특허 전체의 5.24%의 특허가 연장대상이 되며 평균 8~10개월 정도 존속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5〉로 나타낼 수 있다.

〈표 5〉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비율과 예상연장기간

구 分	1년 이내 심사청구(A)		1년 이후 심사청구(B)		전체(A+B)	
	연장대상	연장 비율(%)	연장대상	연장 비율(%)	연장대상	연장 비율(%)
전체	0.63	9.4	1.26	8.2	1.89	8.2~9.4
내국인	0.42	8.8	0.28	6.9	0.70	6.9~8.8
외국인	1.21	10.0	4.03	8.4	5.24	8.4~10.0

4) 물론 내국인 특허 중 지연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IV. 산업별 분석

이제 산업별로 등록지연 문제를 분석해보자. 특히 데이터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이를 산업별 분류로 전환하기 위해 IPC 기술분류와 산업별 분류를 연결한 OECD(1994)의 분류를 이용하였다.⁵⁾

산업별 분석의 경우에는 공간의 절약을 위해 전체 산업의 경우처럼 ‘출원후 4년’의 경우와 ‘심사청구 후 3년’이라는 각 기준에 대해서 따로 따로 분석한 결과는 생략하고 ‘출원 후 4년 혹은 심사청구 후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산업별로 보면 화학산업 분야가 지연비율이 4.09%로서 타 분야에 비해서 높다. 이 분야가 의약품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특히 화학분야에서 내국인의 경

우에는 지연비율이 0.78%로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특허의 경우 8.23%가 지연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건수로 보아도 내국인 56건에 비해 외국인은 501건으로서 지연건수가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 훨씬 많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등록지연 보상을 위한 존속기간연장의 효과는 의약품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외국인 특허의 경우 전자산업분야의 경우 등록 특허 중 418건으로서 역시 이 분야에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업별로 예상 평균존속기간을 계산해보자. 〈표 7〉은 위에서 계산한 방식에 의거하여 각 산업별로 1년 이내 심사청구분과 1년 이후 심사청구분을 분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에서 등록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화학산업의 경우 전체 특허의 0.6%가 평균 9.3개월 연장이 예상되며, 3.49%는

〈표 6〉 산업별 지연 특허

구 분	산 업	총건수	전체 평균 소요기간(월)		출원후 4년 심사청구후 3년 초과 특허			
			출원→등록	청구→등록	건수	비율(%)	평균 소요기간(월)	
							출원→등록	청구→등록
전체	CHEM	13,603	39.0	22.7	557	4.09	82.6	45.9
	CONS	3,219	27.4	19.5	25	0.78	78.1	46.3
	ELEC	36,340	33.2	22.4	671	1.85	77.6	48.4
	INST	9,011	32.3	22.4	280	3.11	80.2	50.6
	MECH	2,760	24.7	18.2	33	1.20	78.2	47.7
	PROC	6,577	32.0	19.8	98	1.49	80.2	46.1
내국인	CHEM	7,515	25.3	21.1	56	0.75	69.3	49.2
	CONS	2,813	25.7	19.0	14	0.50	71.5	47.5
	ELEC	28,887	29.5	21.8	253	0.88	71.3	49.3
	INST	5,987	23.9	20.8	76	1.27	69.2	51.8
	MECH	2,180	18.9	17.0	1	0.05	57.5	57.5
	PROC	4,338	22.6	18.8	20	0.46	67.7	50.1
외국인	CHEM	6,088	55.9	24.7	501	8.23	84.1	45.6
	CONS	406	39.2	22.4	11	2.71	86.4	44.9
	ELEC	7,453	47.3	24.4	418	5.61	81.5	47.9
	INST	3,024	49.0	25.6	204	6.75	84.3	50.2
	MECH	580	46.3	22.4	32	5.52	78.8	47.4
	PROC	2,239	50.4	21.9	78	3.48	83.3	45.1

주: CHEM(Chemicals, Pharmaceuticals)-화학 및 의학; CONS(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소비재 및 토목; ELEC(Electricity, Electronics)-전기전자; INST(Instrument)-도구; MECH(Mechanical engineering, Machinery)-기계운송; PROC(Process engineering)-공정

5) OECD,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Patent Manual 1994, Paris 1994

〈표 7〉 산업별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비율과 예상연장기간

구 分	산 업	1년 이내 심사청구(A)		1년 이후 심사청구(B)		전체(A+B)	
		연장대상 비율(%)	연장기간(월)	연장대상 비율(%)	연장기간(월)	연장대상 비율(%)	연장기간(월)
전체	CHEM	0.60	9.3	3.49	8.3	4.09	8.3~9.3
	CONS	0.31	4.4	0.47	6.3	0.78	4.4~6.3
	ELEC	0.76	8.1	1.09	7.7	1.85	7.7~8.1
	INST	1.04	10.5	2.06	11.3	3.10	10.5~11.3
	MECH	0.25	9.7	0.94	9.5	1.19	9.5~9.7
	PROC	0.38	6.8	1.11	7.7	1.49	6.8~7.7
내국인	CHEM	0.44	7.3	0.31	5.1	0.75	5.1~7.3
	CONS	0.28	5.0	0.21	4.2	0.49	4.2~5.0
	ELEC	0.50	6.8	0.38	6.8	0.88	6.8
	INST	0.68	8.5	0.58	10.9	1.26	8.5~10.9
	MECH	0.05	9.5	0.00	0.0	0.00	9.5
	PROC	0.30	6.7	0.16	7.2	0.46	6.7~7.2
외국인	CHEM	0.80	10.7	7.42	8.4	8.22	8.4~10.7
	CONS	0.49	1.8	2.22	7.8	2.71	1.8~7.8
	ELEC	1.77	9.5	3.84	8.0	5.61	8.0~9.5
	INST	1.75	12.1	4.99	11.5	6.74	11.5~12.1
	MECH	1.03	9.7	4.48	9.5	5.51	9.5~9.7
	PROC	0.54	6.8	2.95	7.8	3.49	6.8~7.8

주: 산입명은 〈표 6〉의 주 참조

6.3개월 연장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0.76%가 8.1개월, 1.09%가 5.7개월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는 전체 산업 및 산업별로 등록지연 대상 특허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 특허의 1.9%가 평균 8.2~9.4개월 정도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내국인 특허는 전체의 0.7%정도의 특허가 평균 7~9개월 정도의 연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는 전체의 5.24%의 특허가 연장대상이 되며 평균 8~10개월 정도 존속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출원 특허의 경우에 내국인 출원에 비해서 등록지연이 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될 경우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 출원 특허들이 심사청구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 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짐을 본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장은 의약품 산업과 전자산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②

V. 요약 및 결론

한미 FTA 협상결과로, 특허 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이 연장기간 동안 자유실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연장기간 동안 특허 출원자의 독점권이 보장되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에서 상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권이 강화됨으로써 R&D 투자가 증가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존속기간 연장 대상 특허는 2008년 이후 출원될 특허로 한정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 존속기간 연장